

●**고용노동부령 제266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1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따라”를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여금”으로, “다음 각호의 자로 하여금 조사·연구하게”를 “조사·연구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7인 이상 10인”을 “7명 이상 10명”으로, “동수”를 “같은 수”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라”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로,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한다)에 제출하여야”를 “한다)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를 “둘”로,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개인의 경우에 한한다”를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로, “각호”를 “각 호”로, “아니함을”을 “않음을”로,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을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으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를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을 “허가신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허가신청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3조제4항 중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으로, “허가증 재교부신청서”를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개명에 따른 변경 신청) ① 파견사업주는 제3조제3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파견사업주(사람에 한정한다) 또는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파견사업관리책임자가 개명한 경우 허가신청에 허가증 또는 허가관리대장에 기록된 이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허가신청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으로 개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을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으로,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으로, “각호”를 “각 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의한 당해 사업소의 사업계획서”를 “다른 해당 사업소의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을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표자를”을 “대표자는”으로,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 한한다)”를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28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이하 “파견사업관리책임자”라 한다)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제3항 중 “허가신청은”을 “허가신청은 근로자파견사업”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으로,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로, “받고자 하는 자는”을 “받으려는 파견사업주는”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호서식의 근

로자파견사업”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을 “허가신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의 서류에 대하여 신청인이”를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의”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개인의 경우에 한한다”를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으로,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로,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7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허가신청이”를 “허가신청은”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으로,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를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취소”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를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로 한다.

제9조 중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사업보고서”를 “법 제18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로, “다음달”을 “다음 달”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권한확인증을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근로감독관증 규칙」에 따른 근로감독관증을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동일한”을 “같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한다.

제12조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한다.

제13조 중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7조에 따라 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성명·성별·연령·학력·자격 기타”를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자격, 그 밖에”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8조에 따라”로, “1인 이상 선임하여야”를 “1명 이

상 선임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법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고지 및 통지 등의 업무
- 3. 제15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존

제15조제1항 중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9조에 따라”로, “작성·보존하여야”를 “작성·보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파견의 종료일”을 “근로자파견이 끝난 날”로, “보존하여야”를 “보존해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별로”를 “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장별로”로, “1인”을 “1명”으로, “선임하여야”를 “선임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제17조에 따른 사용사업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존

제17조제1항 중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3조에 따라”로, “사업소별로 작성·보존하여야”를 “사업장별로 작성·보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파견의 종료일”을 “근로자파견이 끝난 날”로, “보존하여야”를 “보존해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파견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 법 제35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말한다.

제19조 중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행정처분기준(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 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 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 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위반행위의 동기·내용·정도 및 횟수 등 다음의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허가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로 감경(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와 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과건근로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 법조문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과건사업을 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2) 법 제6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과건사업을 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4호	경고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3)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1호	허가취소		
(나) 허가를 받지 않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5호	영업정지3개월	허가취소	
(4)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허가취소
(5) 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법 제8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2호	허가취소		
(나) 법 제8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경고	허가취소	
(6) 법 제9조에 따른 허가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7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허가취소
(7)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1호	허가취소		

(8)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8호	경고	허가취소	
(9)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의 내용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9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10) 법 제14조에 따른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10호	경고	영업정지 2개월	허가취소
(11)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11호	허가취소		
(12)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12호	경고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13) 법 제1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13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14) 법 제1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14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15)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15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16)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을 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16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허가취소
(17)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 또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17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허가취소
(18)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에게 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18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19) 법 제28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선임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19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허가취소
(20) 법 제29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20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허가취소
(21) 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21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2) 법 제3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운영 및 파견근로자의 고용관리 등에 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22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23) 법 제38조를 위반한 경우				
(가)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23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 등의 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23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뒤쪽)

수입인지 붙이는 난	수 수 료
	신규: 3만원, 갱신: 1만원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유 의 사 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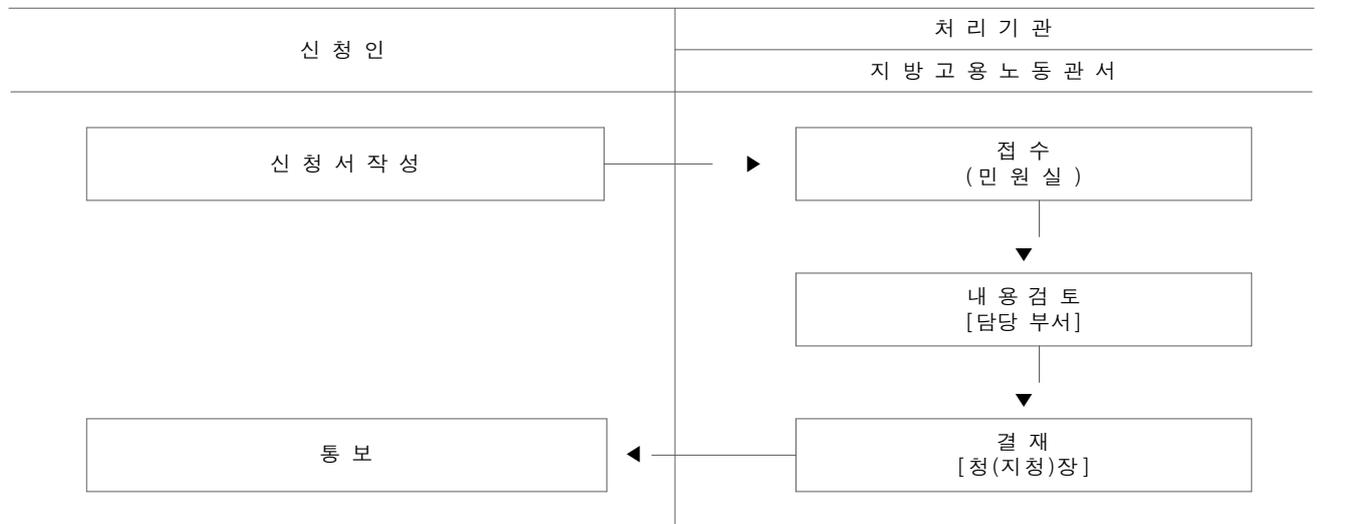
1.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명의를 대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사업소를 둘 이상 두려면 신규허가 신청시의 구비서류 중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3. 갱신허가 신청시의 구비서류 중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작 성 방 법

1. ②란에는 개인업체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④란에는 회사의 전화번호와 대표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기재합니다.
 ※ 휴대전화 번호는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등의 안내에 필요합니다.
3. ⑤란에는 개인업체의 경우에는 사업자 개인을,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기재합니다.
4. ⑦란에는 신청인의 모든 사업용 자산의 상황(법인의 경우 법인 소유자산)을 기재합니다.
5. ⑩란에는 법인의 경우로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임원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 가능).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 계획대상기간: . . .부터 . . .까지

①상호 또는 법인명칭	②전화번호
③소재지	
④대표자	⑤생년월일

2. 파견근로자 고용계획

고용계획 근로자수	①파견대상업무의 종류	②고용계획근로자		
		계	상용형 파견근로자	상용형 외의 파견근로자

3. 근로자 파견계획

사용사업주의 수, 파견지역 등	①파견대상업무의 종류	②사용사업주의 수	③파견지역
④해외파견예정 업무			

4. 자산 등의 현황

①자산상황	계	현금, 예금	토지, 건물	기타
	원	원	원	원
②부채현황	계	부채명세		
	원			

5. 겸업의 유무(겸업할 때는 그 사업의 내용)

6. 사회보험 가입현황

구분	가입번호	구분	가입번호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7. 기타 계획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쪽)

작성 방법

□ 본 사업계획서는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거짓 없이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1. 계획대상기간

- 계획대상기간은 향후 1년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 ④란에는 개인업체의 경우 사업자 개인을,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기재합니다.

2. 파견근로자 고용계획

- ①란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근로자 파견대상업무의 코드를 기재하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의 업무 외의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세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코드를 기재합니다.
- ②란에서 "상용형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을 목적으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상용형 외의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을 목적으로 등록 또는 모집하여 파견기간 동안 고용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3. 근로자 파견계획

- ②란에는 파견근로자 사용이 예상되는 사용사업주의 수를 기재합니다.
- ③란에는 근로자를 파견하는 지역을 시·군·구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4. 자산 등의 현황

- ①란에는 신청인의 모든 사업용 자산상황(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소유자산)을 기재합니다.
- ②란에는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여 부채명세를 내역별로 상세히 기재합니다.

5.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

(앞쪽)

①허가관청	②허가번호			
③허가기간 (최초허가일)	④폐지 또는 허가취소 연월일			
⑤상호 또는 법인명칭	⑥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⑦소재지	⑧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⑨대표자	⑩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⑪대표자 주소				
대상업무별 파견근로자 수	⑫파견대상업무의 종류		⑬파견근로자 수	
	계			
⑭사업소 현황				
사업소의 명칭	소재지		파견사업관리책임자	
⑮임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록기준지	
⑯사회보험가입현황	구 분	가입번호	구 분	가입번호
	산업재해보상보 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

상호(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허가번호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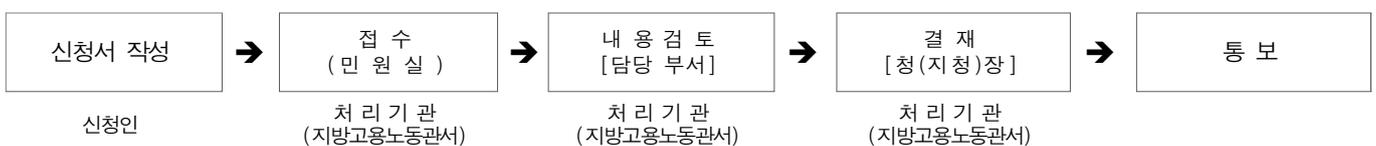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처리절차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근로자파견사업 [] 변경허가신청서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

① 상호(법인명칭)	② 허가번호		
③ 소재지	④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⑤ 대표자	⑥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⑦ 변경사항	⑧ 변경 전		
	⑨ 변경 후		
⑩ 인적사항 변경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록기준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허가 신청 시	1. 사업소 수의 증가 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당 사업소의 사업계획서 나. 해당 사업소의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2. 사업소의 위치변경: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3.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허가증 사본	수수료 2만원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변경신고 시	1. 법인의 임원(대표자를 제외합니다)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 또는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개명: 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정법원의 개명허가서, 개명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등) 4. 상호 또는 법인 명칭의 변경: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허가증 사본	수수료 없음

(뒤쪽)

수입인지 붙이는 난	수 수 료
	변경허가: 2만원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유 의 사 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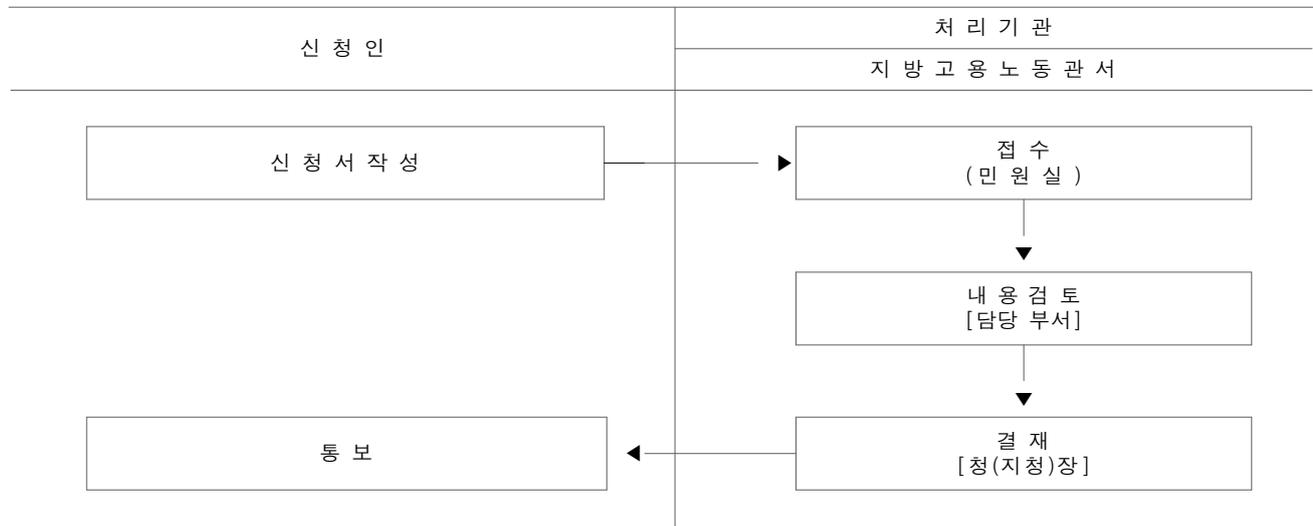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⑩란에는 파견사업주, 법인의 임원, 파견사업관리책임자 등의 인적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

상호(법인명칭)	전화번호
----------	------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
-----	------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	-------

폐지연월일

폐지사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허가증 원본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년도 [] 상반기 [] 하반기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일반현황

①허가번호					②허가연월일
③상호 또는 법인명칭					④소재지
⑤대표자					⑥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⑦생년월일					⑧겸업내용
⑨사회보험가입현황					
구분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번호					
⑩사업소 현황					
사업소의 명칭	소재지			파견사업관리책임자	
⑪근로자파견사업 매출액(해당 반기 매출액 기재)					원
⑫파견근로자 교육훈련 실적					
교육훈련명	실시인원	실시기간	교육훈련내용	교육방법(자체, 위탁)	

2. 근로자 고용현황(상반기: 6월30일 / 하반기: 12월31일 기준)

①총근로자 수		②파견근로자 수	
---------	--	----------	--

3. 근로자 파견실적(해당 반기 실적 기재)

①업무의 종류	②파견근로자 수	③사용사업주의 수	④월평균임금	⑤파견지역		
				국내	국외	
⑥합계						
⑦파견기간별 근로자 수	합계	3개월미만	3개월이상 6개월미만	6개월이상 9개월미만	9개월이상 1년이내	1년초과 2년이내

4. 사용사업주 현황

①상호 또는 법인명칭	②대표자	③사업자 등록번호	④전화번호	⑤소재지	⑥업무의 종류	⑦파견근로자 수

(뒤쪽)

작성 방법

1. (제1호) 일반현황 관련

- ㉔대표자란에는 개인 업체의 경우 사업자 개인을,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기재합니다.
- ㉕겸업내용란에는 파견사업 외에 겸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을 기재합니다.
- ㉖근로자파견사업 매출액란에는 상반기 보고의 경우 해당 상반기의 매출액을, 하반기 보고의 경우 해당 하반기의 매출액을 기재합니다.
- ㉗란의 "교육방법"은 "자체"와 "위탁"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 (제2호) 근로자 고용현황 관련

- ㉘란의 "총근로자 수"에는 상반기 보고의 경우 6월30일 현재, 하반기 보고의 경우 12월31일 현재 파견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파견근로자 수와 근로자파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고용하고 있는 일반근로자 수를 합한 인원수를 기재합니다.
- ㉙란의 "파견근로자 수"에는 총근로자 수에서 일반근로자 수를 제외한 인원수를 기재합니다.

3. (제3호) 근로자 파견실적 관련

- ㉚~㉞란은 업무별로 각각 기재하되 ㉚란의 "업무의 종류"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을 시행령」 별표 1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의 코드를 기재하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시행령 별표 1의 업무 외의 업무)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세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코드를 기재합니다.
- ㉟란의 "파견근로자 수"에는 상반기 보고의 경우 1월1일 ~ 6월30일의 기간 중 파견사업주가 파견한 전체 파견근로자 수를, 하반기 보고의 경우 7월1일 ~ 12월31일의 기간 중 파견사업주가 파견한 전체 파견근로자 수를 기재합니다.
- ㊱란의 "월평균 임금액"에는 업무의 종류별로 근로자 1인당 파견기간 중 월평균 임금액(8시간기준)을 기재하고, ㉞파견지역란에는 근로자파견을 한 지역별(국내 또는 국외) 해당 업무에 파견된 근로자 수를 기재합니다.
- ㊲란에는 각 반기 중(상반기 또는 하반기) 파견사업주가 파견한 전체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각 파견근로자의 실제 파견기간을 산정하여 각 파견기간 별 파견근로자 수를 기재합니다.
 - ※ 실제 파견이 해당 반기 이전부터 해당 반기까지 이어진 근로자는 전체 파견기간을 합산하고, 파견계약기간이 해당 반기 이후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실제 파견기간인 해당 반기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 (예) 파견계약기간을 2010.11.1. ~ 2011.10.31.로 정하여 파견한 근로자의 경우, 2011년 상반기 보고 시에는 해당 반기 이전부터 해당 반기까지의 실제 파견기간인 2010.11.1. ~ 2011.6.30.으로 계산(6개월이상 9개월미만에 해당), 2011년 하반기 보고 시에는 2010.11.1. ~ 2011.10.31.로 계산(9개월이상 1년이내에 해당)

4. (제4호) 사용사업주 현황 관련

- ㉟란의 "업무의 종류"는 제3호 ㉚란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음영처리 된 부분의 합계는 일치해야 합니다.(제3호 ㉟란 = 제3호 ㊲란 = 제4호㉟란의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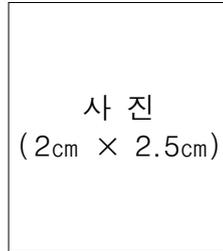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제 호

권한확인증

- 1. 소속:
- 2. 직명:
- 3. 성명:
- 4. 생년월일:



위 사람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폐쇄조치 등의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인]

60mm×90mm(백상지 150g/㎡)

(뒤쪽)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을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1. 해당 사무소 또는 사무실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
- 2. 해당 사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 3.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파견사업주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사업을 할 수 없게 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이유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는 등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한편, 근로자과건사업 허가관리대장을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사업주 등이 개명한 경우 근로자과건사업 허가증 등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근로자과건사업 허가관리대장의 전산망 입력·관리(안 제3조제3항)
허가관청은 근로자과건사업 허가 시 작성·관리해야 하는 근로자과건사업 허가관리대장을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음.
 - 나. 과건사업주 등의 개명에 따른 근로자과건사업 허가증 등의 변경 신청(안 제3조의2 신설)
과건사업주는 과건사업주(사람에 한정함), 법인의 대표나 임원, 과건사업관리책임자가 개명한 경우 근로자과건사업 허가증 또는 허가관리대장에 기록된 이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9-24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상실원인구분	한국국적 취득일	수반 취득
김덕남	1942.**.**	여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5.11.20	국적회복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2019.10.22.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9-46호

「과주 무대공연 종합아트센터 건립」 기본계획

「과주 무대공연 종합아트센터 건립」에 대한 기본계획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공사의 목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연예술 무대용품 보관수요를 해소하고 대여·재활용 등으로 무대용품 가치를 제고하며 무대용품을 활용한 공유경제를 도입하여 문화산업 활성화에 기여